

2019-○○○ 감봉 1월 처분 취소 청구

처분	
요지	지갑 절도
결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 볼 수 없음.
관련	
규정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청구인 : ○○○

소속 ○○고등학교 직위 교사

피청구인 : ○○교육감

피청구인이 2019. 8. 12. 청구인에게 한 감봉 1월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2019. 8. 31. 이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을 제기하여 위원회는 심사를 거쳐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 경과

- 가. 청구인은 2012. 3. 1. 교사로 임용되어, 2017. 3. 1.부터 ○○고등학교로 발령받아 근무하고 있다.
- 나. 청구인은 2019. 2. 27. ○○키즈 놀이방 내 사물함에서 해당 사물함을 직전에 사용했던 사람이 두고 간 현금 44,000원, 신용카드, 신분증 등이 들어 있는 여성용 지갑을 발견하고 이를 가져갔다.
- 다. 청구인은 2019. 4. 4. 절도 피의사건에 관하여 ○○경찰서에서 절도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였다.
- 라. ○○경찰청은 2019. 4. 15. 청구인에 대하여 절도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
- 마. 피청구인은 2019. 5. 30. 청구인에 대해 경징계 의결을 요구하였다.
- 바. ○○교육청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는 2019. 7. 15. 청구인에 대해 감봉 1월을 의결하였다.
- 사. 피청구인은 2019. 8. 12. 청구인에 대하여 감봉 1월 처분을 하였다.

2. 처분 사유

가. 징계원인이 된 사실

- 1) 청구인은 2019. 2. 27. 18:56경 ○○키즈 놀이방 내에서 피해자 □□가 현금 44,000원, KB카드 등 신용카드 4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이 들어 있는 여성용 지갑을 171번 사물함에 넣어 놓은 것을 발견하고 이를 몰래 가져가 절취한 사실이 있다.

2) 이에 ○○검찰청으로부터 ‘절도(「형법」 제329조)’ 혐의로 2019. 4. 15.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나. 청구인의 진술

청구인이 2019. 7. 15.에 개최된 2019년 제6회 ○○교육청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한 바에 따르면,

- 1) 청구인은 2019. 2. 27. 18:56경 ○○키즈 놀이방 내에서 피해자 □□가 현금 44,000원, KB카드 등 신용카드 4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이 들어 있는 여성용 지갑을 171번 사물함에 넣어 놓은 것을 발견하고 이를 몰래 가져가서 절취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 2) 청구인은 지갑의 물건에 전혀 손대지 않고 지갑 그대로 돌려주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해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 3)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잘못된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선처를 바란다고 하였다.

다. 증거 및 판단

청구인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서, 관련자료, 참고인 진술, 본인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판단한 결과,

- 1) 청구인은 2019. 2. 27. 18:56경 ○○키즈 놀이방 내에서 피해자 □□가 현금 44,000원, KB카드 등 신용카드 4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이 들어 있는 여성용 지갑을 171번 사물함에 넣어 놓은 것을 발견하고 이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고, 2019. 4. 4. 경찰에서 연락이 오기 전까지 돌려주지 않은 사실이 있다.
- 2) 청구인의 「형법」 위반(절도) 혐의는 행위 당시의 상황 및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고도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노력한 점,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라고 인정되는 점, 감경 제외 비위가 아니므로 포상 감경이 가능한 점, 본인이 반성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다.

라. 결론

청구인의 위와 같은 「형법」 제329조 위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5조 및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제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3. 청구인 주장

- 가. 청구인은 습득한 지갑을 우체통에 넣거나 경찰서에 갖다주는 방법으로 지갑의 주인을 찾아 주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사물함에서 지갑을 꺼낸 뒤, 학교 골프장으로 이동한 후 겉옷과 소지품을 골프장 내 사물함에 넣어 둔 채 집으로 돌아왔는데 개학으로 정신없이 바쁜 시간이 계속되던 중 2019. 4. 4. 경찰로부터 전화를 받아 지갑에 대한 일을 생각해 냈고, 즉시 그 지갑을 경찰서에 전달하였다.
- 나. 경찰은 청구인에게 “절도에 해당한다. 큰 손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인정하면 별문제 없지만, 혐의를 부인하면 일이 커진다.”라며 청구인에게 자백을 강요하였고, 청구인이 자초지종을 설명하며 실수라고 얘기했지만, 조사가 끝난 후 받아 본 신문조서에는 사실상 절도를 인정하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었다. 이에 청구인이 항의하였으나, 경찰은 “지갑을 가져간 것은 맞지 않느냐. 그 내용을 조서에 옮긴 것에 불과하다. 더 할 말이 있다면 검찰에서 하시라.”며 청구인의 항의를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청구인은 검찰에서 결백을 밝히기 위해 준비하던 중 검찰은 추가적인 조사 없이 바로 기소유예 처분을 한 것이다.
- 다. 청구인은 해당 지갑에 있던 신용카드와 현금을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도 지갑을 되찾은 후 고소를 취하하였으며, 청구인이 해당 지갑을 골프장 사물함에 넣어 둔 채 잊어버렸는데, 2019. 4. 4.

경찰의 연락을 받기 전까지 지갑이 사물함에 그대로 있었고, 청구인은 충분한 자력이 있어 해당 지갑을 절취할 동기가 없으며, 키즈카페의 특성상 CCTV가 설치되어 있다는 점을 청구인도 잘 알고 있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에게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 라. 청구인의 범행을 인정한 유일한 증거가 피의자 신문조서에 불과한 상황에서 경찰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는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는데, 청구인이 재판을 받았다면 혐의 사실에 대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상태가 되고, 무죄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 마. 따라서 경찰의 신문조서만을 근거로 혐의를 인정한 검찰의 판단은 유지될 수 없으며, 경찰의 신문조서, 검찰의 판단을 전제로 한 징계처분 역시 유지되어서는 안 된다.

4. 판단

가.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청구인은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로 기재된 경찰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강요에 의한 것이고, 여러 정황을 볼 때 청구인에게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경찰의 신문조서와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제반 증거의 전체적인 입증취지에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부분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① 청구인은 해당 지갑을 우체통에 넣거나 경찰서에 가져다주기 위해 가져갔다가 돌려주는 것을 잊어버렸다고 주장하나, 통상적인 일반인의 경우 경험칙상 유실물을 습득할 때 해당 시설을 관리하는 주체에 맡기는 것이 일반적이고, 만일 청구인이 경찰서에 해당 지갑을 가져다줄 의사가 있었다면 이를 습득한 ○○키즈 놀이방에서 불과 190m(직선거리 90m) 거리에 있고 청구인이 학교로 가는 동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지구대에 이를 손쉽게 가져다줄 수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낮다.
- ② 청구인은 해당 지갑을 습득한 당일에도 학교 내 골프장에서 동료교사와 골프를 친 점에 미루어 볼 때 지속적으로 학교 내 골프장의 수납장을 이용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지갑을 습득한 2019. 2. 27.부터 이를 경찰에 돌려준 2019. 4. 4.까지 해당 지갑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추측하기는 어렵다.
- ③ 청구인은 경찰의 강압에 의해 신문조서가 작성되었고, 이에 대해 변호인을 선임하여 검찰 수사 단계에서 불복하려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경찰의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이후 충분히 신문조서를 확인하고 이에 불복할 수 있었으며, 나아가 만일 청구인이 해당 조서의 내용을 비롯하여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 자력이 충분하고 이미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던 청구인으로서는 변호사를 통하여 충분히 현법재판소에 현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청구하지 아니하였다.
- ④ 절도 행위는 경제적 어려움이나 자력의 여부와 상관없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경제적 사정이 좋다거나 자력이 충분하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의 불법영득의사를 부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 1) 교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한 것이라고 할 것이며,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두471 판결 등 참조).
- 2)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① 교원에게는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고 교원의 품위손상행위는 본인은 물론 교원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보다 엄격한 품위유지 의무를 부담하는 점(대법원 2000. 6. 9. 선고 98두16613 판결 참조), ② 청구인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학생들의 준법성과 윤리의식 함양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위에 있으므로 이러한 범죄행위는 학생들에게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고 보인다는 점, ③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은 ‘품위유지의무 위반’ 중 ‘그 밖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대해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감봉을 예정하고 있고 청구인의 행위는 이에 해당된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어 청구인에 대한 감봉 1월 처분이 과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감봉 1월 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을 현저하게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5.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